

파생상품펀드 법규



파생상품펀드 법규

[학습내용]

1. 금융투자상품의 정의
2. 자본시장법상 파생상품펀드
3. 파생결합증권 및 파생상품투자 시의 운용규제
4. 파생상품투자 시의 위험평가액 산정방법
5. 파생상품펀드의 위험지표 공시 등
6. 파생상품펀드 판매 시 강화된 투자자보호제도

[학습목표]

1. 금융투자상품의 정의를 이해할 수 있다.
2. 파생결합증권 관련 규제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

파생상품펀드 법규

1. 금융투자상품의 정의

금융투자상품(자본시장법)

- ❖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현재 또는 장래의 특정시점에 금전,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취득하는 권리로서
- ❖ 그 권리를 취득하기 위해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전 등의 총액이 그 권리로부터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 등의 총액을 초과하게 될 위험("투자성"이라 함)이 있는 것
- ❖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상품을 다시 **증권과 파생상품으로 구분**하고 각각에 해당하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음



▣ 자본시장법상 명시적으로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

- ❖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 ❖ 신탁법상의 관리형신탁 수익권
- ❖ 상법상의 주식매수선택권

파생상품펀드 법규

1. 금융투자상품의 정의

1) 증권

일반적 정의

증권(자본시장법)

금융투자상품으로서 투자자가 취득과 동시에 지급한 금전 등 외에
추가로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것

→ 투자자의 최대손실이 투자원금으로 한정되는 금융투자상품

◆ 신주인수권(Warrant)의 경우, 권리행사 시 신주대금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하는바, 이러한 경우는 투자원금을
지급하는 것이지 추가지급의무가 있는 것은 아님

→ 투자가 기초자산에 대한 매매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게 됨으로써 부담하게 되는 지급의무를 제외함

증권

원본초과손실 가능성이 없는 금융투자상품

파생상품

원본초과손실 가능성이 있는 금융투자상품

파생상품펀드 법규

1. 금융투자상품의 정의

1) 증권

증권의 종류

▣ 자본시장법은 증권을 아래와 같이 6가지로 구분함



▣ 채무증권

- ◆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사채권, 기업어음증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지급청구권이 표시된 것

▣ 지분증권

- ◆ 주권,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 상법에 따른 합자회사·유한책임회사·유한회사·합자조합·익명조합의 출자지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출자지분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할 권리가 표시된 것

1. 금융투자상품의 정의

1) 증권

증권의 종류

▣ 수익증권

- ◆ 신탁의 수익증권,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신탁의 수익권이 표시된 것

▣ 투자계약증권

- ◆ 특정 투자자가 그 투자자와 타인(다른 투자자를 포함) 간의 공동사업에 금전 등을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계약상의 권리가 표시된 것

▣ 파생결합증권

- ◆ 기초자산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지급하거나 회수하는 금전 등이 결정되는 권리가 표시된 것

▣ 증권예탁증권

- ◆ 증권을 예탁받은 자가 그 증권이 발행된 국가 외의 국가에서 발행한 것으로서 그 예탁받은 증권에 관련된 권리가 표시된 것

1. 금융투자상품의 정의

1) 증권

파생결합증권의 정의

- ▣ **자본시장법은 기초자산을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함
(이러한 기초자산은 파생결합증권은 물론 파생상품에 동일하게 적용됨)**
- ◆ 금융투자상품
- ◆ 통화(외국의 통화를 포함)
- ◆ 일반상품(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광산물·에너지에 속하는 물품 및 이 물품을 원료로 하여 제조하거나 가공한 물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함)
- ◆ 신용위험(당사자 또는 제삼자의 신용등급의 변동, 파산 또는 채무재조정 등으로 인한 신용의 변동을 말함)
- ◆ 그 밖에 자연적·환경적·경제적 현상 등에 속하는 위험으로서 합리적이고 적정한 방법에 의하여 가격·이자율·지표·단위의 산출이나 평가가 가능한 것

1. 금융투자상품의 정의

1) 증권

파생결합증권에서 제외되는 상품

- ◆ 파생결합증권에 속하였으나 2013년 5월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발행과 동시에 투자가 지급한 금전 등에 대한 이자, 그 밖의 과실에 대하여만 해당 기초자산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의 변동과 연계된 증권, 즉 **파생결합사채는 파생결합증권이 아닌 채무증권으로 재분류되었음**
- ◆ 파생결합사채는 발행회사인 증권사의 신용위험을 제외하면 투자자에게 원금이 보장되면서 기초자산의 변동과 연계하여 금리만 변동하는 채무증권이라고 할 수 있음
- ◆ 현재 **파생결합사채는 ELB(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 DLB(기타파생결합사채)**라고 불리고 있음

1. 금융투자상품의 정의

2) 파생상품

선도, 옵션 및 스왑

◆ 선도(Forward)

-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 등을 장래의 특정시점에 **인도**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 옵션(Option)

- 당사자 어느 한쪽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 등을 수수하는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약정하는 계약

◆ 스왑(Swap)

- 장래의 일정기간 동안 미리 정한 가격으로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 등을 **교환**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1. 금융투자상품의 정의

2) 파생상품

장내파생상품 및 장외파생상품

■ 장내파생상품

- ◆ 파생상품시장(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위해 한국거래소가 개설하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것 또는 해외 파생상품시장(파생상품시장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해외에 있는 시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 파생상품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것

■ 장외파생상품

- ◆ 파생상품으로서 장내파생상품이 아닌 것

→ 파생상품이지만 파생상품시장 또는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지 아니하는 것

파생상품펀드 법규

1. 금융투자상품의 정의

2) 파생상품

// 대통령령이 정하는 해외 파생상품거래(법 시행령 제5조) //

- ▶ 런던 금속거래소의 규정에 따라 장외(파생상품시장과 비슷한 시장으로서 해외에 있는 시장 밖)에서 이루어지는 금속거래
- ▶ 런던 귀금속시장협회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귀금속거래
- ▶ 미국 선물협회의 규정에 따라 장외에서 이루어지는 외국환거래
- ▶ 선박운임선도거래업자협회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선박운임거래
- ▶ 그 밖에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조건이나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거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거래

④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거래

대륙 간 거래소의 규정에 따라 장외에서 이루어지는 에너지거래

파생결합증권 및 파생상품 종류 예시

구분	파생결합증권	장내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		
		선물	옵션	선도	옵션	스왑
금리	역변동금리선물, 이중지표금리선물, 장기금리연동채권	국채금리선물 (3년,5년,10년)	-	금리선도 거래(FRA)	이자율CAP, COLLAR	이자율스왑 (IRS)
주식	ELS,ELD,ELF	KOSPI200 선물, 개별주식선물, 코스닥150 선물	KOSPI200옵션, 개별주식옵션	주식선도	주식옵션	주식스왑
통화	통화연계채권	미국달러선물, 엔선물, 유로선물, 위안선물	미국달러옵션	통화선도 거래	통화옵션	통화스왑 (CRS)
상품		금선물, 돈육선물				
신용	신용연계채권, 합성CDO				신용옵션 (CO)	신용스왑 (CDS)

파생상품펀드 법규

2. 자본시장법상 파생상품펀드

1) 개요

- ▣ 자본시장법은 펀드의 종류를 펀드재산의 운용대상에 따라 5가지로 구분하고 있음



파생결합증권 및 파생상품에 투자 가능

- ▣ 자본시장법은 파생결합증권 및 파생상품을 단기금융펀드를 제외한 모든 펀드의 일반적인 운용대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파생상품펀드'를 다른 펀드와 구분되는 독립된 하나의 펀드로 명시적으로는 인정하고 있지 않음
- ▣ 실무적으로 '파생상품펀드'로 볼 수 있는 펀드
 - ▶ 펀드재산의 50%를 초과하여 파생결합증권에 운용하는 펀드
 - ▶ 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펀드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펀드

2. 자본시장법상 파생상품펀드

2) 파생상품펀드의 정의

◆ 금융감독원의 '펀드명칭 표기기준'

- ▶ 파생결합증권이 주된 투자대상자산인 펀드
- ▶ 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1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펀드

→ '파생형'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 자본시장법시행령에서는 일반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적정성의 원칙과 관련하여 '파생상품 등'의 개념 도입

- ▶ 파생상품
- ▶ 파생결합증권
- ▶ 펀드재산의 50%를 초과하여 파생결합증권에 운용하는 펀드
- ▶ 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펀드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펀드

→ 자본시장법은 '펀드재산의 50%를 초과하여 파생결합증권에 운용하는 펀드'와 '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펀드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펀드'를 동일하게 취급

파생상품펀드 법규

2. 자본시장법상 파생상품펀드

2) 파생상품펀드의 정의

파생상품펀드의 정의

자본시장법

파생상품 등 (파생형)	펀드재산의 50%를 초과하여 파생결합증권에 운용하는 펀드 + 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펀드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펀드
-----------------	--

자본시장법상 투자대상유형별 구분

대상자산	증권펀드	부동산 펀드	특별자산 펀드	단기금융펀드 (MMF)	혼합자산 펀드
증권	o	o	o	o	o
파생상품	o	o	o	x	o
부동산	o	o	o	x	o
특별자산	o	o	o	x	o

3. 파생결합증권 및 파생상품투자 시의 운용규제

1) 개요

▣ 동일종목 파생결합증권에 대한 투자비율규제 완화

- ◆ 펀드재산으로 동일종목의 증권에 투자하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각 펀드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제한
(예외) 동일종목의 **파생결합증권**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각 펀드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음
- ◆ 다만, 사모펀드의 펀드재산으로 동일종목 파생결합증권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각 펀드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 가능

▣ 장외파생상품 매매상대방 규제

- ◆ 펀드재산으로 장외파생상품의 매매를 하는 경우, 적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의 매매는 금지

▣ 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 규제

- ◆ 펀드재산으로 파생상품매매를 하는 경우, 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각 펀드의 순자산총액의 10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금지

3. 파생결합증권 및 파생상품투자 시의 운용규제

1) 개요

◆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 규제

- ◆ 펀드재산으로 파생상품매매를 하는 경우, 파생상품의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각 펀드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금지
- ◆ 다만, 사모펀드인 경우에는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각 펀드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 가능

◆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 규제

- ◆ 펀드재산으로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각 펀드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금지
- ◆ 다만, 사모펀드인 경우에는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각 펀드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 가능

4. 파생상품투자 시의 위험평가액 산정방법

1) 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 산정방법

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은 장내파생상품 또는 장외파생상품의 거래에 따른 명목계약금액으로 하며, 그 명목계약금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승수효과(레버리지)가 있는 경우 이를 감안하여야 함

◆ 선도거래

- 기초자산(자산의 가격이나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인 경우에는 지수를 말한다)의 가격에 거래량(계약수)과 승수를 곱하여 산정

◆ 옵션거래: 다음 각 목을 명목계약금액으로 함

- 옵션매수 : 기초자산가격에 계약수와 승수 및 델타(기초자산 가격이 1단위 변화하는 경우 옵션가격 변화)를 각각 곱한 금액(이하 "델타위험액")
- 옵션매도 : 델타위험액에 추가로 델타 변화에 따른 위험액(이하 "감마위험액")과 기초자산 변동성 변화에 따른 위험액(이하 "베가위험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

4. 파생상품투자 시의 위험평가액 산정방법

1) 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 산정방법

▣ **스왑거래**: 다음 각 목을 명목계약금액으로 함

- ◆ 서로 다른 통화를 교환하는 거래(통화스왑) :
지급하기로 한 통화의 명목원금
- ◆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교환하는 거래(금리스왑) :
 - 고정금리를 지급하는 경우 만기까지 지급하기로 한 금전총액
 - 변동금리를 지급하는 경우 만기까지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전총액의 시가평가금액
- ◆ 준거자산의 신용사건 발생 여부에 따라 금전 등을 교환하는 거래(신용부도스왑) :
 - 보장매수자의 경우 지급하기로 한 금전총액
 - 보장매도자의 경우 신용사건 발생 시 지급하기로 한 명목금액
- ◆ 준거자산의 수익을 교환하는 거래(총수익스왑) :
 - 수취하기로 한 금전총액이 부(-)의 값을 가지는 경우 지급하기로 한 금전총액과 수취하기로 한 금전총액의 절대값을 더한 금액
 - 수취하기로 한 금전총액이 양(+)의 값을 가지는 경우 지급하기로 한 금전총액

5. 파생상품펀드의 위험지표 공시 등

- ◆ 자본시장법은 '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펀드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펀드' 즉 '**파생형**'에 해당하는 파생상품펀드가 펀드재산으로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게 **위험지표 공시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 특히 '장외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펀드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펀드'에 대해서는 별도의 위험관리방법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 다만, 이러한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의무부과는 사모펀드 및 전문사모펀드(헤지펀드를 의미)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5. 파생상품펀드의 위험지표 공시 등

1) 파생상품펀드의 위험지표 공시

**파생상품펀드의 펀드재산으로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자는
해당 파생상품펀드에 투자하는 투자자가
그 위험수준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위험지표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함**

공시대상 위험지표

- ◆ 계약금액
- ◆ 파생상품매매에 따른 만기시점의 손익구조
- ◆ 시장상황의 변동에 따른 펀드재산의 손익구조의 변동 또는 일정한 보유기간에 일정한 신뢰구간 범위에서 시장가격이 펀드에 대하여 불리하게 변동될 경우에 파생상품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대손실예상금액
- ◆ 그 밖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요한 기준이 되는 지표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위험에 관한 지표

5. 파생상품펀드의 위험지표 공시 등

1) 파생상품펀드의 위험지표 공시

■ 공시대상 위험지표의 산정방법 ■

◆ 계약금액 :

- ◆ 파생상품거래의 유형별로 매수, 매도 및 순포지션(매수-매도)으로 나누어 산정된 명목계약금액의 총액을 기재

◆ 파생상품거래에 따른 만기시점의 손익구조 :

- ◆ 당해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에 따라 펀드의 이익이 발생하는 구간과 손익이 없는 구간 및 손실이 발생하는 구간으로 구분하여 투자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도표 등으로 나타내고, 이를 서술식으로 요약하여 기재**

◆ 시장상황변동에 따른 펀드재산의 손익구조변동 :

- ◆ 시나리오법에 따라 산정하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함

◆ 일정한 보유기간에 일정한 신뢰구간 범위 안에서 시장가격이 펀드에 대하여 불리하게 변동될 경우 파생상품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대손실예상금액(VaR)

최대손실예상금액(VaR) =

보유포지션의 시장가치 × 신뢰구간에 따른 표준편차의 배수
× 포지션의 변동성(표준편차) × $\sqrt{\text{보유기간}}$

5. 파생상품펀드의 위험지표 공시 등

1) 파생상품펀드의 위험지표 공시

// 공시대상 위험지표의 산정방법 //

◆ **최대손실예상금액(VaR)**은 아래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 ◆ **최대손실예상금액(VaR)**은 **10영업일의 보유기간 및 99%의 단축 신뢰구간**을 적용하여 일일 단위로 측정되어야 함

→ 다만, 10영업일보다 짧은 보유기간을 사용하여 최대손실예상금액(VaR)을 산정한 후 이를 10영업일에 상당하는 수치로 전환시켜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0영업일간의 최대손실예상금액은 “1일간의 최대손실예상금액(VaR) $\times \sqrt{10}$ ”으로 산정함

- ◆ **최대손실예상금액(VaR)**은 1년 이상의 자료관측기간을 기초로 하여 측정되어야 하며, 시장상황에 따라 **최소한 3개월에 1회 이상 자료구성을 수정·보완**시키되, 시장가격의 중대한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수정·보완기간을 **단축**하여야 함
- ◆ 옵션포지션에 대한 최대손실예상금액(VaR)은 **간편법** 또는 **델타플러스법**에 따라 산정하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함

5. 파생상품펀드의 위험지표 공시 등

1) 파생상품펀드의 위험지표 공시

위험지표의 공시시기

- ‘계약금액’ 및 ‘파생상품거래에 따른 만기시점의 손익구조’는 파생상품거래 후 그 **다음날까지** 공시하여야 함
- ‘시장상황변동에 따른 펀드재산의 손익구조변동’ 및 ‘최대손실예상금액(VaR)’은 **매일** 공시하여야 함

6. 파생상품펀드 판매 시 강화된 투자자보호제도

1) 적정성의 원칙 적용

- ▣ 금융투자업자가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지 않고 파생상품펀드를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그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여야 함
- ▣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에 비추어 해당 파생상품펀드가 그 일반투자자에게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알리고, 일반투자자로부터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함

○ 일반투자자에게 알려야 할 사실

- 1) 해당 파생상품펀드의 내용
- 2) 해당 파생상품펀드 투자에 따르는 위험
- 3) 해당 파생상품펀드가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에 비추어 그 일반투자자에게 적정하지 아니하다는 사실

6. 파생상품펀드 판매 시 강화된 투자자보호제도

2) 차등화된 투자권유준칙 제정의무

- ▣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서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투자권유준칙”이라 함)를 정하여야 함
- ▣ 그런데, 금융투자업자는 파생상품펀드에 대해서는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을 고려하여 투자자 등급별로 차등화된 투자권유준칙을 마련하여야 함

파생상품펀드 법규

6. 파생상품펀드 판매 시 강화된 투자자보호제도

3) 투자권유 위탁 제한

- ▣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권유대행인에게 투자권유를 위탁할 수 있음
- ▣ 다만, **파생상품펀드**에 대해서는 투자권유대행인에게 투자권유를 **위탁할 수 없음**

파생상품펀드 법규

[Test]

1. 다음 중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 ① 외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 ② 투자신탁의 수익권
- ③ 상법상의 주식매수선택권
- ④ 파생결합증권

정답 : ③

해설 : 자본시장법은 명시적으로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신탁법상의 관리형신탁 수익권, 상법상의 주식매수선택권을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2. 다음 중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의 종류가 아닌 것은?

- ① 증권집합투자기구
- ②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
- ③ 파생상품집합투자기구
- ④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정답 : ③

해설 : 자본시장법은 '파생상품집합투자기구'를 다른 집합투자기구와 구분되는 독립된 하나의 집합투자기구로 명시적으로는 인정하고 있지 않다.

파생상품펀드 법규

[Test]

3. 다음 중 파생상품펀드에서 공시해야 할 위험지표와 거리가 **먼** 것은?

- ① 계약금액
- ② 파생상품거래에 따른 중도 환매시점의 손익구조
- ③ 시장상황변동에 따른 펀드재산의 손익구조변동
- ④ 최대손실예상금액(VaR)

정답 : ②

해설 : 파생상품거래에 따른 만기시점의 손익구조'를 파생상품거래 후 그 다음날 까지 공시하여야 한다.

파생상품펀드 법규

[Summary]

증권의 정의

- 증권은 원본초과손실 가능성이 없는 금융투자상품으로서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의 6가지임

파생상품의 정의

- 파생상품은 원본초과손실 가능성이 있는 금융투자상품으로서 선도, 옵션, 스왑으로 구분하고 파생결합증권은 파생상품이 아니라 증권으로 분류됨

파생결합증권 및 파생상품 투자시의 운용규제

- ① 동일종목 파생결합증권에 대한 투자비율규제 완화 : 30%까지 가능
- ② 장외파생상품 매매상대방 규제 : 펀드재산으로 장외파생상품매매를 하는 경우, 적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매매 금지
- ③ 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 규제 : 순자산총액의 100% 이내

파생상품 등의 공시

- 파생형 펀드가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위험지표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고 투자설명서에 해당 위험지표의 개요 및 위험지표가 공시된다는 사실을 기재하여야 함